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2

2023. 10. 23.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10.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0. 1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치구조 정비(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정비(확대).

O 입지기준 정비(제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설치가능한 입지기준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선기)

- 본 개정 조례(안)는 상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 내용은 보면 제4조(설치구조)에 육묘장을 추가하고, 제5조 (입지기준)제1호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 1가구에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O 없 음

6. 심사결과

O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O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